



현장실습 운영규칙

규정번호	3-4-12
제정일자	1997.03.01
개정일자	2015.03.02
개정번호	Ver. 10
총페이지	5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칙 제31조 제 ⑤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실습교과”라 함은 교과목 이론 강의시간이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하인 교과목을 말하며, 이론 강의시간이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한 교과목은 이론교과로 본다.

② “현장실습”이라 함은 전공교과와 관련이 있는 산업체 등에서 실습 근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, “교내실습”이라 함은 교내에 산업체와 유사한 교육환경과 조건을 구비하여 실습수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“현장실습”은 방학 중 현장실습, 취업연계 현장실습으로 구분하며,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근무시간을 실습시간으로 보며 수업일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 “방학 중 현장실습”이라 함은 방학 중에 학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소정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, “취업연계 현장실습”이라 함은 최종 학기 교육과정이 실습교과로 편성된 학과가 해당학기를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으로 병행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각 학과는 교내에서 수업할 수 없는 전공교과목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학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계획된 각 학과는 소정기간의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현장실습은 학과 전공 및 교육과정과 연관된 실습기관(산업체)에서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
제4조(운영체제) ①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처에서 총괄하며, 학과장이 관리 운영한다.

② 학과 현장실습 담당자는 학과장의 지휘로 현장실습 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현장실습 산업체 선정) ①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·학·관 연계 협약 체결 산업체
2. 5인 이상 고용 산업체
3. 산업체 위탁과정으로 인가한 산업체
4. 기타 총장이 인정한 산업체

②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준하여 학생이 임의로 산업체를 선택한 후 소속 학과장의 허가를 득하면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처장은 각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실습 산업체로 추천된 산업체의 장에

계 현장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.

제6조(현장실습 운영조건) ① 현장실습은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현장실습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현장실습에는 산업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체 관리자를 현장실습 지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“방학 중 현장실습” 중인 학생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,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및 학생실습종합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, 현장실습으로 근무 중인 학생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. 단, 산업체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.

④ “취업연계 현장실습”은 산재보험·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어야 하며,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7조(현장실습 산업체 변경) ① 현장실습 산업체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이 중지되는 경우, 학과장은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산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변경은 승인할 수 없다.

제8조(현장실습 개설시기) ① 제2조 ③항의 “방학 중 현장실습”은 1학년 하계방학기간부터 졸업학기 직전 방학기간 중 본인이 1개 기간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2조 ③항의 “취업연계 현장실습”은 학생의 최종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학과장은 시간외 및 공휴일에 현장실습이 실시된 경우, 그 일수를 현장실습에 가산하여야 한다.

제9조(현장실습생의 배정 및 사전 교육) ① 학과장은 산업체별로 업체의 특성, 대상 학생의 적성, 희망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실습생을 배정하고 실습생들에게 공지한다.

② 현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습 대상자의 경우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③ 기타 현장실습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중 현장실습 인정 신청을 하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자는 현장 실습생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④ 학과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현장실습 일정 및 사전교육 사항
2. 안전 및 예절교육
3. 학과별 현장실습 프로그램
4.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 사항
5. 현장실습 중지 사유
6.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현장실습 순회지도) ① 학과장은 현장실습기간중에 순회 지도교수를 정하여 1회 이상 현장실습 학생의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.

1. 실습생의 출결 상황

2. 실습 태도 및 이행능력
3. 현장실습일지 기록 상황 및 실습 진도
4. 실습생을 지도감독, 평가할 산업체 담당자의 지정 여부 및 지도 상태
5. 현장여건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등

- ② 학과장은 순회지도 실시 전에 산업체별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학과장은 현장실습 종료와 함께 산업체 방문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산학협력처 취업창업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현장실습일지 작성)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, 산업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현장실습 취득학점) ① “방학 중 현장실습”은 2주 이상의 현장실습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. 방학 중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과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전공 3학점 이내로 하며, 현장실습 학점은 2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에, 3년제 학과는 3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 (단, 조기졸업 희망자는 조정할 수 있다.)

② “취업연계 현장실습”에 대한 취득학점 및 성적은 해당학기에 수강 신청된 교과목 중에서 실습교과에 한하여 부여된다.

제13조(현장실습 결과물 제출) ① “방학 중 현장실습”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현장실습 결과보고서, 현장실습 평가서, 현장실습일지 등 결과물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취업연계 현장실습”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별로 부여받은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 등 결과물을 해당 실습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현장실습 성적평가) ① 현장실습 성적 평가는 학칙에 의한다.

② “방학 중 현장실습”은 현장실습 종료 후 평가기간내에 평가자료에 의거 담당교수가 현장실습 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하고, 평가서는 산학협력처 취업창업지원팀에 제출한다.

③ “방학 중 현장실습”의 성적평가는 산업체 평가서 50%, 현장실습 순회지도 30%, 현장실습일지 및 기타 과제물 20%로 한다. 현장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할 경우 이수자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⑤ “취업연계 현장실습”의 성적평가는 출석 20%, 산업체 평가 30%,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 50%를 기준으로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하며, 해당 학생의 중간고사 결과가 있는 경우는 출석 20%, 중간고사 30%, 산업체 평가 20%,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 30%를 기준으로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한다.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현장실습 기간을 반영한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을 개별 부여하여야 한다.

제15조(현장실습 인정범위) 총장이 승인하는 현장실습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4조에 규정된 산업체로서 전공과 직무분야가 관련이 있는 산업체
2. 제4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산업체로서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임을 담당교수가

인정하는 경우

- 3. 산업체 재직자로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임을 담당교수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경우
- 4. 작품전 출품 제작에 참여중인 자이거나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중인 자 중에서 현장실습 인정 신청을 하고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

제16조(현장실습계약 등)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제17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취업창업현장실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전면 개정으로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